

2020년도 제33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2020. 12. 07.(월)
- 방 법: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김경숙 위원(분과위원장), 노정동 위원, 최승수 위원,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II. 회의내용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50건(안건번호 제2020-162881호~제2020-162930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안전번호 제2020-162881호~제2020-162930호는 불법 복제한 영상 저작물 영화 는 불법 복제한 음악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 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상기 안전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아닌 이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가결함 다만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이 중지된 경우에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해야할 것임

- C 위원: 금번 심의 안전인 복제물의 경우에는 모두 저작권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저작물로서 복제·전송자들이 정당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저작권자의 복제·전송권을 침해한것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심의대상 안전은 7개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50건의 복제물에 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건들임. 안전번호 제2020-162881호~162930호(순번 1번~50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최신 영상물(영화)들임. 이들 영상물들은 모두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창

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들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복제·전송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들이 이들 저작물들을 영리목적의 웹하드 사이트에 사전허락없이 게시한 결과, 저작권자가 얻어야 할 경제적 수익을 박탈함으로써 합법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제133조의3에 근거하여 권리자의 위임이나 요청이 없더라도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는 측면에서 복제 전송의 중단과 삭제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다만,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이 타당할 것임.

2020년 제335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2. 07.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노정동

위원 최승수

위원 최현용